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관련 1934
----------	---------

제출년월일 : 2021년 1월 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2020년 1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개정경위

- 발 의 : 장인홍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21명
- 의 결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2020. 12. 16)
- 우리시 이송 : 2020. 12. 16.
- 재의요구 기한 : 2021. 1. 5.

2.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 재의요구 사유

-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분리·대립시켜 각자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행정

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을 통하여 의회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을 고유한 권리로 부여하며, 의회로 하여금 사전 통제나 예산편성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 개정안 관련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경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보통세의 1000분의 4 이상 1000분의 6이내)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교육경비 보조금)을 의무화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제약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하한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재원이 부족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붙임1)

나. 서울특별시의회 이송 조례안(붙임2)

○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6이내”를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p> <p>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6이내</u>의 금액으로 한다.</p>	<p>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p> <p>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u>의 금액으로 한다.</p>